

# 도시대학원 외국어시험 내규

## 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학칙 제35조(석·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) 및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(외국어시험) 제13조-18조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외국어시험)

-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, 그 1종은 영어로 한다. 다만,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, 그 1종을 영어로 한다. 단,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.

## 제3조(응시자격)

- ① 외국어시험은 첫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.
- ③ 재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가능하며, 휴학생은 신청하지 못한다.

## 제4조(합격기준)

외국어시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선을 조정 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외국어시험 면제 기준)

-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안에 공인기관 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해당 학기의 외국어시험의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며,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TOEIC	TOEFL			TEPS	G-TELP		IELTS	GRE (verbal reasoning)	GMAT	TOPIK
	PBT	CBT	IBT		Level 2	Level 3				
730	530	213	80	605*	67	89	6	150	590	4급

※ 2018년 개정된 TEPS의 경우 329점.

-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 중,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, 영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③ 국제어학원의 대체영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한 경우, 영어시험을 면제한다.

**제6조 (대체영어강좌)**

- ①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운영하는 대체영어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.
- ② 대체영어강좌의 수강 자격은 도시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으로 한다.
- ③ 대체영어강좌 수강에 따른 수업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**부칙**

- 1.(시행일)이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(2015. 10. 공포)
- 2.(시행일)이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(2019. 03. 공포)

2019. 03. 04

도시대학원장

김 흥 배



도개개발경영·부동산학과

이 명 훈



도시개발경영·부동산학과

Blaz Kriznik (인)



도시개발경영·부동산학과

고 준 호



도시설계·경관생태조경학과

구 자 훈



도시설계·경관생태조경학과

최 창 규



도시설계·경관생태조경학과

이 상 훈



도시설계·경관생태조경학과

김 건 우

